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84

발의연월일: 2021. 12. 14.

발 의 자:김성원·김용판·김정재

박대수 · 이양수 · 이주환

임이자 · 정운천 · 조명희

주호영 · 최춘식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 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 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 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해진 후 25여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수당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있음.

이에 사전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2항, 제161조제13항 및 제181조제1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중 "手當과 식비"를 각각 "수당과 실비"로 한다.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만, 실비의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161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투표참관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한다.

제181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개표참관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6
의한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	
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u>手</u>	<u>수</u>
當과 식비	<u>당과 실비</u>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7
의한 開票參觀人의 <u>手當과 식</u>	<u>수당과</u>
<u>비</u>	<u>실비</u>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② 제1항의 수당과 실비의 종
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	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
會가 정한다.	회가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

③ (생략)

第161條(投票參觀) ① ~ ⑫ (생 략)

<신 설>

① (생략)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③ |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 ③ (생 략)
 - ④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 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 며, 실비는 <u>「공무원여비규정」</u> 에 따른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만, 실비의 경우 선거사무관계 자 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 되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第161條(投票參觀) ① ~ ⑫ (현 행과 같음)
 - ③ 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최 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 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투표참관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 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A)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_
<u>제13항</u>	_
,	_
	_
	_

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 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⑤ (생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 ⑪ (생 제181조(개표참관) ① ~ ⑪ (현 략)

<신 설>

①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행과 같음)

②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최 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 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개표참관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 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① (현행 제12항과 같음)